

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입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의장·대표이사 한정수(이하 '의장'이라 함.)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■ 제1호 의안: 기존 대주간 합의서 해지의 건

의장은 제 1 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체결된 대주간 합의서 해지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물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2 호 의안: 기존 대출약정서 해지의 건(미인출수수료 지급)

의장은 제2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체결된 대출약정서 해지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3 호 의안: 기존 표준사업약정서(PF 보증) 해지의 건(Tr. A, B, C)

의장은 제3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체결된 표준사업약정서(PF보증) 해지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문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4 호 의안: 기존 보증채무 약정서 해지의 건(Tr. A, B, C)

의장은 제4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날인 제출한 보증채무약정서 해지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5 호 의안: 임대리츠 표준사업약정서 변경체결의 건

의장은 제5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체결된 임대리츠 표준사업약정서 변경체결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6 호 의안: 신규 대주간 합의서 체결의 건

의장은 제6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규 대주간합의서 체결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7 호 의안: 신규 대출약정서 체결의 건

의장은 제7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규 대출약정서 체결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8 호 의안: 신규 표준사업약정서(PF 보증) 체결의 건

의장은 제8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규 표준사업약정서 (PF보증) 체결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9 호 의안: 신규 보증채무 약정서 체결의 건

의장은 제9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규 보증채무 약정서 체결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10 호 의안: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

의장은 제10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및 인허가 추진을 위해 2019년 2월 기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여 계약체결하고자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11 호 의안: 정관의 변경의 건

의장은 제11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우선주 수익률 변동 사항등 정관 수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특별결의안건으로써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■ 제 12 호 의안: 부동산 개발사업계획 변경의 건

의장은 제12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특별결의안건으로써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승인하여 본 의안을 가결하다.

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

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다.

2019년 12월 23일

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 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대 표



한 정 수

